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박용갑 · 이훈기
최민희 · 김상욱 · 송옥주
박해철 · 김남근 · 이재관
이정현 · 김우영 · 이춘석
권향엽 · 윤준병 · 이광희
위성곤 · 박지원 · 박희승
송재봉 · 백승아 · 한민수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2024년 명확한 근거 없이 R&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1만 여개에 달하는 과제의 연구비와 연구개발 목표가 하향조정되거나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. 이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거나 연구 인력이 감원되어 일자리를 잃은 청년 연구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R&D 예산 삭감의 여파로 ‘연구계의 대동맥이 끊겼다’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연구 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음.

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

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%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,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,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8월 20일까지로 늘리는 등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,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의2).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월 30일”을 “8월 2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·조정 내역”을 “예산의 배분방향 및 배분·조정 내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”를 “제5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 총지출(「국가재정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총지출을 말한다)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·조정 등) ① ~ ④ (생략)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,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 1.·2. (생략) 3.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·조정 내역	제12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·조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8월 20일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예산의 배분방향 및 배분·조정 내역

3의2. ~ 9. (생략) ⑥·⑦ (생략)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<u>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</u> <u><신설></u>	3의2. ~ 9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<u>제5항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⑨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<u>국가 총지출 (「국가재정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총지출을 말한다)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--	--